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24. 3. 19.

총 2면

www.nec.go.kr

공보과 02)3294-1000 ~ 1006

## 중앙선거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하여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포·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붙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상금 지급 주요사례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상금 지급 주요사례

연번	위 반 내 용	포상금 지급액
1	<p>[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구민에 선물 등 제공]</p> <p>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명함배부 및 지지부탁 등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함.</p> <p>또한, 관내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 및 식사를 제공함.(20. 1. 17. 고발)</p>	1억원
2	<p>[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p> <p>입후보예정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부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택배로 제공함.(19. 12. 4. 고발)</p>	1,890만원
3	<p>[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p> <p>입후보예정자가 정당 행사에 참가인원을 동원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무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함.(19. 9. 17. 고발)</p>	1,540만원
4	<p>[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p> <p>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를 당내경선에서 당선시키기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당비대납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 행사에 참석시키기위해 버스를 임차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함.(20. 8. 31. 고발)</p>	1,500만원